

의안번호	제 80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8월 25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808 호

제출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도입, 전·후방 산업 고도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음성군 대소면 음성 성본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하는 것이며,
-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청년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적 기업 혁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음성 성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위 치 : 음성군 성본 산업단지(금왕읍, 대소면) (G12 - 4, 5, 6)
- 사업기간 : 2021. 9. ~ 2022. 12.
- 규 모 : 165,290m²
※ 충북도는 165,290m² 중 24%(39,669.6m²)를 지분으로 취득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240, 도비 96, 군비 64)
※ 조성원가 기준 부지매입비, 단가 241,999원/m²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오창과학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21. ~ 2023.
- 규 모 : 연면적 5,500㎡ (지상5층) ※ 부지면적 : 3,830.3㎡(도유지)
- 층별계획(안)

구 분	사용계획
1층	공유오피스, 회의실, 근린생활시설(카페) 등
2층	창업지원기관, 협업공간, 창업지원시설(시제품 제작 등)
3층	신산업 창출 혁신지원기관, SW·ICT 융합 지원기관 등
4~5층	기업지원기관(행정, 일자리 등), 창업·벤처연구소 기업 입주공간 등

- 사 업 비 : 118.3억원(국비 38.3, 도비 80)
※ 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21. 4. 23.)

3.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39,669.6	9,600,000				
	건물	1건	5,500	11,830,000				
	기타							
1	토지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G12-4, 5, 6	39,669.6	9,600,000	'21. 9.	외국인투자지역조성	성본산업 단지(주)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	5,500	11,830,000	'21~'23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신축	-	신축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 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